

공 고

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83호

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.

2026. 5. 18.

서울지방우정청장

1. 설치 예정지역

설치예정 지역	설치수	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	1	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

2. 위탁대상 업무

가.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

나. 우편물 접수

※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·관리 업무 수행 가능

3. 신청자격

○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

- [붙임 2] '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' 참조

※ [붙임 2]의 15번 항목 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(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)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”은 제6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

4.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

- 가.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.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(우편취급국 포함)이 없어야 함
- 나.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
- 다.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㎡ 이상 권고,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, 지상3층(승강기 설치 필)까지 허용함
- 라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제1호(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)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

5. 창구환경 시설

- [붙임8]의 「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」에 부합하여야 함

6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6. 4.(목) ~ 2026. 6. 5.(금) 09:00 ~ 18:00

나. 교부장소

- 관할우체국 지원과(제1항 참조) 직접교부
-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koreapost.go.kr/se>) 「소식-일반공고」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

다. 제출서류

-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
- ※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

- [붙임1] ~ [붙임5]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
-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,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
-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,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'임대차계약서'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.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- 다 음 -

1) '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' 또는 '가계약서'

※ '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'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(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(또는 본인 서명)

2)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3) 사용허가 승인서(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)

7.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

가.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나. 이 위원회의 심의는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」[별표1]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.

- 다. 1개의 위탁지역(설치예정지역)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다. (단, 5순위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까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.)
- 라. 위탁대상자 선정기준[붙임7]에 따라 이용 편의성, 업무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.
- 마. 위탁대상자 선정기준[붙임7]의 ‘이용 편의성’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, ‘업무수행능력’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.
- 바.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,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사. 선정결과는 2026. 6. 19.(금)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,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.
- 아.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 11조에 따라 [붙임8] 「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」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.
- 자.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,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8. 위탁수수료

- 가. 기본수수료 : 월 756천원(업무일,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)
- 나. 영업수수료 :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,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(세부내용은 [붙임9] 참고)

9. 기 타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(☎ 02-6967-9221) 또는 신청서 교부.접수처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(☎ 02-2049-0512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0. 유의사항(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)

- 가.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[붙임5] 양식작성)
- 나. '수탁신청인'이 1인 이하인 경우, 「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1차 공고(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66호)에 따른 신청자는 제6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'수탁신청서', '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'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★ 아래 붙임(양식)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

- 붙임 1.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
 - 1-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 - 2.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
 - 3. 자기소개서 1부
 - 4.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
 - 5. 확인서 양식 1부
 - 6.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(총괄국에서 작성,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) 1부
 - 7.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
 - 8.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
 - 9.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